

의안번호	제 313 호
의결 연월일	2015. . . (제 회)

**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발의자	임병운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5년 11 월 23 일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임병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23일

발의자 : 임병운, 박봉순, 박종규,
박한범, 장선배, 최병운,
김양희

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방안 권고 등에 따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
-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수지 개선을 위해 위탁교육과 단순 시설이용자를 구분하고 연수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연학습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3조)

- 청천면 송면리 → 화양로 1314-12번지

나.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
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준용하여 처리토록 함.

다. 관리·운영 수탁자를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정(안 제12조)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정

라. 두 번 이상 위탁 시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을 평가 후 연장(안 제12조)

- 위탁기간 연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고, 두 번 이상 연장이 필요한 경우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토록 규정

마. 시설사용료 조정(별표)

- 연수비, 숙식비,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

3. 개정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5-32호

라.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협의

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**「청소년기본법」**” 을 “**「청소년 기본법」**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**송면리**” 를 “**화양로 1314-12번지**” 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**” 를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**” 를 “**각 호의**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**관리자**” 를 “**도지사**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**제반시설**” 을 “**해당 시설**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별지 제1호 서식**” 을 “**별지 제1호서식**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별지 제2서식에 따라**” 를 “**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**” 으로, “**알려야**” 를 “**보내야**” 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사용료의 반환)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기간만큼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
제12조제1항 중 “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, 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학습원 관리·운영을”을 “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그 위탁기간”을 “위탁기간”으로, “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”을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이외의”를 “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하며,

제14조 중 “파손·망실하였을 경우는”을 “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

제15조제1항 중 “익년도”를 “다음 해”로, 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”를 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회의”를 “각 회의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[별표]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(제10조 관련)

□ 연수비(위탁교육)

(단위 : 1인당, 원)

구 분	숙박비(1박)	식비(1식)	교육비(1인)	비고
초등학생	8,500	5,500	16,000	
중학생	9,000	5,800	16,200	
고등학생	9,500	6,100	16,400	
대학생/일반인	10,000	7,000	19,000	

※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 (단순 시설사용자의 식비도 위에 준함)

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

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사용기준	사 용 료	비 고
숙 소	1실/1박	44,000	
대 강 당	1실/4시간	300,000	
회 의 실 (대)	1실/4시간	150,000	
회 의 실 (중)	1실/4시간	100,000	
회 의 실 (소)	1실/4시간	100,000	
다목적운동장	1면/4시간	200,000	
캠프파이어	1면/1회	300,000	위탁만 운영가능
잔디운동장	1면/4시간	200,000	
물놀이장	1면/1일	200,000	
서바이벌게임	1명/1게임	학생(5,000), 일반(15,000)	
체험시설	1명/1회	10,000	
야영장	1명/1회	-	미운영

※ 위탁교육의 경우, 서바이벌게임과 체험시설을 제외한 시설사용에 대해 추가요금 없음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에 따른 사용료는 이 조례 공포 후 시설

사용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“청소년단체“란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위치) 충청북도자연학습원(이하 “<u>학습원</u>“이라 한다)은 괴산군 청천면 <u>송면리</u>에 둔다.</p>	<p>제3조(위치) ----- ----- <u>화양로 1314-12번지</u> --.</p>
<p>제4조(시설사용) 학습원은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 해당하는 경우에 <u>한정하여</u>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4조(시설사용)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<u>에 해당하는 경우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연수신청) 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기관·단체는 다음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<u>관리자</u>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연수신청) ①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도지사</u>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시설사용신청)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, 심신단련,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자에게는 <u>제한시설</u>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지 제1호 서식</u>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으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<u>별지 제2호 서식</u>에 따라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<u>알려야</u> 한다.</p>	<p>제9조(시설사용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시설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별지 제1호서식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서식</u> ----- ----- <u>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보내야</u> -----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의2(사용료의 반환)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기간만큼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.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·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<u>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, 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한다)에 학습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경우 <u>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한다)에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탁기간</u> ----- --- <u>한 차례에 한정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재산의 관리)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<u>이외의</u>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,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(재산의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외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--- 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시설변상책임) 연수생, 시설이용자,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<u>파손·망실하였을</u> 경우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시설변상책임) ----- ----- ----- <u>파손 또는 잃어버렸을</u> 경우에는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예산과 결산) 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<u>익년도</u>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<u>도지사에게</u>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예산과 결산) ① ----- ----- <u>다음 해</u> ----- ----- --- <u>도지사의 승인을</u> <u>받아야</u> 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<u>각호의</u>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<u>1회</u>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 <u>한 차례</u> ----- ----- 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 <u>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</u> (제10조 관련)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수비(숙박비, 식비, 시설사용교육비) (단위 : 1인당, 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숙박비 (1박)</th> <th>식비 (1식)</th> <th>시설사용·교육비 (1일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초등학생</td> <td>7,000</td> <td>4,500</td> <td>11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중학생</td> <td>7,500</td> <td>4,800</td> <td>11,2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고등학생</td> <td>8,000</td> <td>5,100</td> <td>11,4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대학생/ 일반인</td> <td>9,000</td> <td>5,500</td> <td>11,600</td> <td>부가세 별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이 외 체험시설 및 서바이벌게임 이용 시 추가로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 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</p>	구분	숙박비 (1박)	식비 (1식)	시설사용·교육비 (1일)	비고	초등학생	7,000	4,500	11,000		중학생	7,500	4,800	11,200		고등학생	8,000	5,100	11,400		대학생/ 일반인	9,000	5,500	11,600	부가세 별도	<p>[별표] <u>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</u> (제10조 관련)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수비(위탁 교육) (단위 : 1인당, 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숙박비 (1박)</th> <th>식비 (1식)</th> <th>교육비 (1인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초등학생</td> <td>8,500</td> <td>5,500</td> <td>16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중학생</td> <td>9,000</td> <td>5,800</td> <td>16,2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고등학생</td> <td>9,500</td> <td>6,100</td> <td>16,4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대학생/ 일반인</td> <td>10,000</td> <td>7,000</td> <td>19,0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 (단순 시설사용자의 식비도 위에 준함) 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</p>	구분	숙박비 (1박)	식비 (1식)	교육비 (1인)	비고	초등학생	8,500	5,500	16,000		중학생	9,000	5,800	16,200		고등학생	9,500	6,100	16,400		대학생/ 일반인	10,000	7,000	19,000	
구분	숙박비 (1박)	식비 (1식)	시설사용·교육비 (1일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등학생	7,000	4,500	1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학생	7,500	4,800	11,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등학생	8,000	5,100	11,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학생/ 일반인	9,000	5,500	11,600	부가세 별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숙박비 (1박)	식비 (1식)	교육비 (1인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등학생	8,500	5,500	1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학생	9,000	5,800	16,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등학생	9,500	6,100	16,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학생/ 일반인	10,000	7,000	19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	사용 기준	사 용 료		비 고
		고등학생 이하	대학생 /일반인	
대강당	1실/시간	10,000	20,000	대학생/일반인은 부가세 별도
회의실	1실/시간	7,000	15,000	
운동장	1면/시간	10,000	20,000	
캠핑파이어장	1면/시간	10,000	20,000	
야영장	1면/1박	5,000	10,000	
체험시설	1명/1회	4,000	8,000	
서바이벌 게임	1명/1회	4,000	8,000	

- ※ 이 외 숙박비 및 식비는 연수비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
- ※ 19세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사용료 적용.

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	사용기준	사 용 료	비 고
숙 소	1실/1박	44,000	
대 강 당	1실/4시간	300,000	
회의실 (대)	1실/4시간	150,000	
회의실 (중)	1실/4시간	100,000	
회의실 (소)	1실/4시간	100,000	
다목적 운동장	1면/4시간	200,000	
캠핑파이어	1면/1회	300,000	위탁만 운영가능
잔디운동장	1면/4시간	200,000	
물놀이장	1면/1일	200,000	
서바이벌 게임	1명/1게임	학생(5,000), 일반(15,000)	
체험시설	1명/1회	10,000	
야영장	1명/1회	-	미운영

- ※ 위탁교육의 경우, 서바이벌게임과 체험시설을 제외한 시설사용에 대해 추가요금 없음.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6.21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6.21.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1.>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청소년단체“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청소년활동진흥법

제10조(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수련시설

가. 청소년수련관: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나. 청소년수련원: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다. 청소년문화의 집: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
라. 청소년특화시설: 청소년의 직업체험, 문화예술, 과학정보,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

마. 청소년야영장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,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

바. 유스호스텔: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·설비와 부대·

편익시설을 갖추고, 숙식편의 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(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·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)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

2. 청소년이용시설: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

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국가는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3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4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·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③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,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“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

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“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19조의2(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,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·방법·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)

56.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(3개 업종)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1-2)

분 쟁 유 형	해 결 기 준	비 고
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) 신체상 피해발생 4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개시일 이전 - 개시일 이후	○ 계약해제 ○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○ 배상액 배상 ○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 ○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	*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「회원제 체육시설업」 제외 · 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* 개시일이란,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,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.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2-2)

분 쟁 유 형	해 결 기 준	비 고
5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개시일 이전 - 개시일 이후	○ 총이용금액의 10% 공 제 후 환급 ○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% 공 제 후 환급	
○ 사은품 반환 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· 사은품 미사용 시 : 해당 사은품 반환 · 사은품 사용 시 :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 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(단,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.) ·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: 현존상태로 반환 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·해지 시: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. ○ 체육시설업 -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종합체육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 ○ 레저용역업 -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 ○ 할인회원권업 -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		